

##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. 19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2. 제안이유
  - 의정모니터단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, 의정모니터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 - 의정모니터단증(안 제4조의2)
    -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○ 의정모니터단 활동지원(안 제7조)

-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4조의2에 따른 단증으로 같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○ 의정모니터단 실비보상(안 제7조의2)

- 의장은 제안 등을 제출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. 19.~ 1. 26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<p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24년 1월 일</p> <p>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 ) 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담양군의회 의장 귀하</p>		

##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**의회의장**”을 “**의회 의장**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**의정모니터단**”을 “**의정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의정모니터단**”을 “**모니터단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자치입법**”을 “**자치법규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**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**

4. **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**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의정모니터단**”을 “**모니터단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**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단의 임기도 종료된다.**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**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, 부단장을 둘 수 있다.**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의정모니터단중) ① **의장은 의정모니터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**

한다)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증(이하 “단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단증에는 발급번호, 이름,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장에게 제3조2항의 각 호와 같이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록·관리해야”를 “기록·관리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의정모니터단”을 각각 “모니터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「담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주민조례 발안을”을 “주민조례청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정모니터단”을 “모니터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은 단원이 모니터단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회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,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4조의2에 따른 단증으로 갈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비보상 등) 의장은 제안 등을 제출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의정모니터단”을 “모니터단”으로, “해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정모니터단의”를 “모니터단의”로, “의정모니터단 활동”을 “모니터단 활동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의정모니터단”을 “단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정모니터단”이란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<u>의회의장</u>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회 의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의장은 모니터링 등에 따라 의정활동의 원활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<u>의회 의정모니터단</u>을 둔다.</p> <p>② <u>의정모니터단</u>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군민의 여론 파악 및 각종 제안</u></p> <p>2. 조례 등 <u>자치입법</u>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</u></p>	<p>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의정모니터단</u>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<u>모니터단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</u></p> <p>2. ----- <u>자치법규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</u></p>

니터링

제4조(구성) 의정모니터단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2항의 각 호와 같이 각종 제안이나 건

터링

제4조(구성) 모니터단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. 다만,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단의 임기도 종료된다.

②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, 부단장을 둘 수 있다.

제4조의2(의정모니터단증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증(이하 “단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단증에는 발급번호, 이름,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-----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-----



의 등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모니터단 제안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등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6조(해촉)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7조(활동지원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 기록·관리하여야 --.

제6조(해촉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해촉할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(활동지원) ① ----- 모니터단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모니터단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열 수 있다.

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활동결과 조례의 제정, 개폐가 필요한 경우 「담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의정모니터단이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개인정보 보호 등) ① 제5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모니

-----.

③ ----- 모니터단 -----  
-----  
---- 「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----- 주민조례청구를 -----.

④ 모니터단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의장은 단원이 모니터단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회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,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4조의2에 따른 단증으로 같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실비보상 등) 의장은 제안 등을 제출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 보호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모니터단-----

터단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의정모니터단의 회의, 간담회, 그 밖에 의정모니터단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포상)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의정모니터단에 대해서는 「담양군의회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하여야 --.

② 모니터단의 -----  
----- 모니터단 활동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포상) -----  
----- 단원-----  
-----  
-----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정모니터단(단원) 제안서			
성명		연락처	
의견 분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정활동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재·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건의 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개선(불편해소)		
제목			
현황			
개선건의			

##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

월간	20 년 월						
접수 일자 접수 번호	접수 방법	단원 성명	접수 내용	접수자	결재		
			처리 결과	담당자	팀장	과장	의장
	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 <input type="checkbox"/> 홈페이지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 <input type="checkbox"/> 홈페이지						